

제 2010-CU-0221 호



안 전 인 증 서

한국쓰리엠보건안전유한회사

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763-2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결과 안전·보건 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방독마스크(검용)

형식·모델/용량·등급/인증번호

형식·모델	용량·등급	인증번호
6000시리즈반면형(6100(S),6200(M),6300(L))+ 6003K+5N11	직결식반면형 저농도 유기화합물 할로겐 황화수소 아황산용 1급	10-AV4CU-0221

인 증 기 준

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08-77호)

인 증 조 건

아래 주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함.

한국쓰리엠보건안전유한회사,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763-2

(변경내역)
 2010년 07월 09일 최초발급
 2011년 02월 28일 생산공장 변경
 2014년 12월 30일 생산공장 변경

2014년 12월 30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